



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

GYEONGGI CHAPTER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

수 신 각지역건축사회 회장

(참조)

제 목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개정 고시 내용 알림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89호)가 ‘21.02.10.에 개정 고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 (근거법령:「건축법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)

1) 과다한 제출도서 지양(2.2, 별표 1 및 별표2)

-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함

2)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불가(3.1, 3.4 및 3.6)

-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함

3)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(6.2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제5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함

4)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(6.3)

- 건축위원회 심의를 ‘지자체가 지정·공고한 지역’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

5)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(7.1)

- 「건축법」제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

*시행시기: ‘21.02.10.

붙임: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일부개정 고시 1부. 끝.



경기도건축사회 회장

담당	이정민	과장	서유비	사무처장	홍태선	부회장	최형순	회장	정내수
협조자									
시행	경기총무230-140	(2021.2.19.)			접수				
우	440-853	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1(파장동) 신관 2층			http://kgira.kira.or.kr				
전화번호	031-247-6129	/ 팩스번호			031-242-7072	kira6129@hanmail.net			